



# 도담

# 도담



2018년 5월(제 5호)

## 대여성 악성범죄 근절!

###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중대 범죄

####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란?

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하는 행위(성특법 제14조)

-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-



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하는 행위

-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-



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

-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-

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「신상정보 등록 대상자」가 되어 '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 및 직장 소재지, 연락처, 신상정보, 차량 정보'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함(10년 ~ 30년 등록정보 관리)

##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집중 단속·점검

❖ 집중 단속·점검 기간  
2018. 5. 17. ~ 8. 24.(100일 간)

❖ 집중 단속·점검 내용  
-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기기 유통  
- 음란물 공급·유포  
- 다중 이용 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

##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



- 일반 불법 촬영 사건 100만원 이하
- 성폭력 사건(영리목적 불법 촬영 사건 등) 1,000만원 이하
- 조직적·반복적 성폭력 사건(예: 워터파크 사건) 2,000천만원 이하



###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?

1.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
2.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
3.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헌정한 공로가 있는 사람
4.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
5.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
6.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

단, 공로가 미약한 경우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
